

## 차별 금지 (제6장) 정책 성명서

---

다음은 SJTPO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을 포괄하는 비차별 정책 성명서입니다:

SJTPO는 1964년 민권법 제6조, 1987년 민권 회복법 및 모든 관련 비차별 법령, 규칙, 규정 및 행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JTPO는 인종, 피부색, 나이, 장애, 출신 국가, 성별 또는 소득 상태를 이유로 활동이 연방 자금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SJTPO가 시행하는 연방 위임 대도시 교통 계획 과정을 통해 어떠한 사람이나 그룹도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장합니다.

SJTPO의 모든 계획, 프로그램, 절차, 정책 및 활동이 소수자와 저소득층에게 불균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책입니다. 미국 인구 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수자 및 저소득층 커뮤니티는 대도시 교통 계획 과정에 완전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SJTPO는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 접근을 제공할 것입니다.

적격 하위 수혜자에게 연방 원조 자금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SJTPO는 행정 주최 기관인 사우스 저지 교통청(SJTA)을 통해 체결된 모든 서면 계약에 Title VI 언어를 포함시키고 해당 계약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SJTPO의 전무이사는 조직의 타이틀 VI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타이틀 23 연방 규정(CFR) 파트 200 및 타이틀 49 CFR 파트 21에 따른 기타 요구 사항과 책임을 담당합니다.

타고요 \_\_\_\_\_

(공인 공무원의 서명)